

제2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 
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檢 討 報 告 書

【정선희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1. 3. 2.

運 營 委 員 會

專 門 委 員 金 玉 然

#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檢 討 報 告 書

## 1. 경 과

의안 제303호로 2021년 2월 17일 정선희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의 개정으로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에 의정운영공동경비가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조례에서 정하는 업무추진비에 의정운영공동경비 추가  
(안 제2조)

## 4. 참고사항

-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64조제1항
- 「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」
-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
-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다. 입법예고 결과(2020. 2. 19. ~ 2. 24.): 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용어를 정비하여 운영상  
미비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

### 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2021년 1월 1일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별표 6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 대상에 기존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, 시책추진업무추진비,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의정운영공동경비가 추가되었음.
- 이를 따라 **안 제2조제1호**에 의정운영공동경비를 추가하여 상위 법령에 맞추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.

# 참 고 자 료

## 1 지방회계법 시행령

- 제64조(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)**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회계 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국고금 관리법」 등 국가의 회계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회계 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- ② 이 영과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## 2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“업무추진비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.
  -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: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, 의회사무기구의 장,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,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
  -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: 지방의회 의장·부의장·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
- “회계관계공무원”이란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.

**제3조(업무추진비의 집행)** 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

여 집행하여야 한다.

- ②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2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)** 제3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「공직선거법」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 방법은 별표 1 제8호나목 및 별표 2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명의로 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세부기준 등)**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지출 증빙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## 2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

**제23조의2(세출예산 집행 기준)**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효율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고, 집행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원칙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을 위한 일반 기준은 별표4와 같다.
2.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은 별표5와 같다.
3.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 기준은 별표6과 같다.

### 별표 6

####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

##### 1. 개 요

-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따른 내역을 공개하며 대상 비목은 아래와 같다.
  - 기관운영업무추진비, 시책추진업무추진비, 의정운영공통경비, 의회운영 업무추진비

- 공개단위는 비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한다.
  - 기관운영업무추진비,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관장, 부기관장, 실·국장  
과 과장급이 장인 부서(부서장의 집행내역을 포함한다) 단위로 집행내  
역을 공개
  -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와 상임위원회 별로 집행내역을 공개
    - \* 지방의회는 의회 전체의 명의로 집행하는 경우 해당
  -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의장, 부의장, 상임위원장, 예결위원장의  
집행내역을 공개
- 항목은 사용자, 일시, 장소, 집행목적, 대상 인원수, 금액, 결제방법(신용카드,  
제로페이, 현금 등), 비목으로 구분한다.
- 공개주기와 시기는 최소 분기마다 공개하며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한다.
  - 지방자치단체(지방의회 포함) 정보공개 및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 
(규칙)로 공개항목을 추가하거나 주기와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.
- 공개방법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.
-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, 정보공개법의 규정에 따라 비공  
개 대상인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